##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유상범·박충권·조정훈

정점식 • 구자근 • 조배숙

이철규 · 박형수 · 임종득

배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 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 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 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법률 제 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